

『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및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립예술단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예술단 부단장 변경 : 문화예술회관장 → 평생교육원장
-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 - 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: 문화예술회관장 → 평생교육원장
 - 부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장은 위원으로 위촉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및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시립예술단 부단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평생교육원장으로 변경하고, 예술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평생교육원장으로, 기존 부위원장이었던 문화예술회관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및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